

[자율기구] 동포체류통합과 운영 성과보고서

□ 운영 개요

- (설치 근거) 법무부훈령 제1598호 「자율기구 ‘동포체류통합과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('26. 1. 5.)
- (설치 목적) “동포 체류자격 통합” 시행 및 후속대책 등 마련, 동포의 사회통합·권익증진 및 인권 보호 방안 추진 등
- (운영 기간) '26. 1. 5. ~ '26. 7. 4.(6개월)

* 연장예정 : ~ '27. 1. 4.까지

□ 주요 업무

-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단순노무 취업범위 설정 및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 개발에 관한 사항
- 「외국인·동포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」 법제화, 동포 가족의 체류·적응지원 정책 개발, 무국적 동포 출입국 및 체류 방안 등 동포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
- 동포 지역특화 비자 운영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국내 체류 동포의 비자·체류·취업·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 정책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
□ 주요 추진 성과

-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 수립 후 시행('26. 2. 12.) 및 홍보
 - 이분화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[방문취업(H-2), 재외동포(F-4)]을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으로 통합하는 정책 수립 및 시행
 - 산업현장의 인력난 및 국민 일자리 침해를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존 재외동포의 취업이 제한되었던 10개 직업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는 「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」 개정
 -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전방위 홍보* 및 동포정책 교육 출강
 - * 관련 부처 홍보 협조요청, 포스터·웹사이트 배너 등 홍보물 제작·배포, 지방 출입국·외국인관서·동포단체·동포체류지원센터 등 동포접점기관에 대한 교육·안내
- 동포의 사회통합 및 정착 지원 강화
 - 동포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을 고려한 '동포체류지원센터' 지정*·운영 및 추가 지정 공모 실시('26. 3. 23. ~ 4. 1.)
 - * '08년부터 동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에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 중(현 23개)이며, 동포 사회통합 교육 및 국내 정착·적응 지원 등 담당
 - '동포체류지원센터'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 수행
 -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 등 동포용 콘텐츠 개발 및 동포 정착지원
- 동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동포 정책 방향 모색
 -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동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포와의 소통 채널 다변화
 - ※ 「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」 정책 토론회(박군택 의원실 공동개최), 2026년 제1차 다(多)가치 포럼 발제 및 질의응답 등
 - 동포체류지원센터 권역별 설명회 총 7회 개최*('26. 3. 12. ~ 3. 31.)
 - * 서울, 안산, 울산, 대전, 제주, 인천, 광주 순
- 동포의 사회통합·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 - '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'의 중앙협의회 및 지방협의회 '동포권익분과' 신설 협조